



「스토킹처벌법」상 정의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에게 특정 행위(다음 페이지 행위유형)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스토킹 행위유형

1. 접근, 따라다니기, 진로 막기
2.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주거, 직장, 학교 등)를 찾아오거나 부근에서 기다리기, 지켜보기
3.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이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5.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상대방 등의 개인정보, 개인위치정보, 또는 이 두 가지를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 참조: 「스토킹처벌법」 제2조
- 스톱킹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며, 행위 유형에 따라 추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은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 ✓ 스토킹은 생활영역의 자유를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 ✓ 스토킹 피해자는 법률구조, 주거지원, 상담을 비롯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스토킹방지법」 제3조, 제7조~제11조



고충상담, 신고채널

GIST 권익인권센터

(행정동(S2) 4층 401호)



062-715-6801~5



humanrights@gist.ac.kr